



해외 경쟁정책 동향

미국

FTC, 스팸메일규제 규칙제정 거부

연방거래위원회(이하 FTC)는 연방 거래위원회법 제18조(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입법 절차)에 의거하여 통신 연구 센터(the Telecommunications Research and Action Center), 소비자연맹(the National Consumers League) 및 일반적으로 스팸메일이라고 알려져 있는 원하지 않는 상업성 메일의 기만성에 대한 소비자소송에서 제기된 규칙제정을 거부했다.

위원회는 비록 위법적으로 원하지 않는 상업성 메일을 발송하는 행태를 규칙에서 "특별히 정의"해야 하겠지만, 제안된 규칙에는 스팸메일 발송자의 신원이나 위치를 밝혀내야 하는 좀 더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고 위원회 측은 언급했다. 위원회는 문제된 행위가 소비자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가 있으므로 불공정하거나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기만성 때문에 FTC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은 전형적으로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스팸메일 규제를 위한 별개의 입법행위에 대해 난색을 표명했다.

또한 위원회 측은 제안된 규칙이 스팸메일 발송자의 신원이나 위치 등을 확인하는 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위원회는 규칙제안자들에 대한 회신에서 "그러한 규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익이 입법에 소요되는 심각한 시간과 자원의 소모를 정당화시키지 못할 것이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러한 규칙을 만드는 시간에 오히려 FTC가 "허위 또는 기만적인 스팸메일을 발송하는 개인과 사업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FTC법을 적용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소비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나올 것이다"라는 말도 덧붙였다.

또한 이 회신에는 FTC가 스팸메일이 소비자와 사업활동에서 점점 중대한 문제가 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와 관련된 공개포럼을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2003. 2. 3. 연방거래위원회

FTC, 스팸메일방지 워크숍 개최

연방거래위원회는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3일간 워싱턴 D.C.에서 "스팸 포럼"을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 포럼에서는 원치 않는 상업성 전자 메일의 확산 및 이 문제와 관련된 기술적·법적·재정적 문제들을 함께 다루게 된다.

"FTC는 스팸메일이 소비자의 전자 메일 이용실태, 전자메일 마케팅 및 인터넷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기 위해 동 포럼을 개최한다. 전자메일을 이용한 마케팅업자, 스팸메일 발송을 반대하는 단체, 인터넷서비스 제공자(ISP), 스팸메일 방지 프로그램 제작자는 물론이고, 전자메일 기술전문가,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와 관련 법집행 당국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FTC 측은 밝히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스팸메일과 관련된 다음의 주제들을 포함하여 모두 14개의 이슈들이 다루어질 예정이다.

- 소비자피해사례, 필터프로그램 및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들의 남용행위
- 전자메일 주소의 취득 기술
- 스팸메일의 기만적 전달방법
- 스팸메일 규제시 비용편익 분석

- 보안문제
- 전자메일에 첨부되는 바이러스와 스파이웨어 등
- 무선 전자메일
- 스팸메일 규제입법의 현황과 전망
- 스팸메일의 제거 및 감소를 위한 기술

2003. 2. 3. 연방거래위원회

연방법무부, 시장분할 사업자와 합의안 도출

연방법무부는 미국내 영향력 있는 Alternative news weekly 발행업자인 NT Media(New Times) 및 Village Voice Media(Village Voice Media)와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발표했다. 이 합의안에는 이들 회사가 불법적인 시장분할합의를 중단하고, 클리브랜드와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영업을 중지하기 위해 상호간 협약한 Alternative news weekly 발행사업의 자산을 매각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연방법무부가 이들 회사에 대해 자산을 매각하도록 요구한 것은 이들간의 클리브랜드와 로스앤젤레스 지역 광고 시장과 독자 시장에서의 불법적인 분할을 중지시키고 경쟁을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로 이루어졌다.

이미 지난 1월 27일에 연방법무부 독점금지국은 오하이오주 연방지방법원에 New Times와 Village Voice Media가 셔먼법 제1조를 위반했다고 기소했다. 이 당시 독점금지국은 만일 법원에서 수락한다면 법원에 제기한

소를 취하하고 독점금지국에서의 조사 업무도 종료하겠다는 내용의 동의명령서도 동시에 제출한 바 있다.

“시장원리에 의해 승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 회사는 시장 교환을 통해서 경쟁 프로세스를 왜곡시킴으로써 클리브랜드와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각자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경쟁을 통한 편익이 소비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방해했다”고 R. Hewitt Pate 독점금지국장 대행은 말했다. 또한 “셔먼법은 경쟁자간의 이러한 시장분할 의도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lternative news weekly 발행자들은 기존 뉴스 제작·보도업자들에게 선택적인 관점에서 뉴스를 제공해주는 일을 한다. 1955년 가을에 Village Voice Media의 전신이 만들어 졌으며, 이 회사가 첫 번째 Alternative news weekly의 발행자였다. 뉴욕에 위치한 이 회사는 대중적인 Alternative news weekly로서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여, 오늘날에는 미국 지역에서 125개가 넘는 Alternative news weekly를 발행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New Times와 Village Voice Media가 불법적인 협약을 하기 전에는 이들은 클리브랜드와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경쟁적인 위치에 있었다고 한다. 2002년 10월에 New Times는 만일 Village Voice Media가 클리브랜드에서 뉴스발행 사업(the Cleveland Free Times)을 중단한다면, 자신도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의 뉴스발행 사

업(New Times Los Angeles)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 따라서 이들 회사는 시장을 “교환”함으로써 각기 일정한 지역에서 독점사업자가 된 것이다. 이러한 불법적인 합의는 경쟁을 소멸시킴으로써 광고료의 인하를 저해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와 보다 높은 품질의 제공을 방해한다.

연방법무부가 제안한 동의명령에는 이들 회사가 불법적인 합의를 중단하고, 시장분할 합의에 영향을 받은 광고업자들과의 계약을 해지할 것이며, 이들 회사가 새로운 뉴스발행 사업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New Times Los Angeles와 the Cleveland Free Times의 자산을 처분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동의명령에는 당해 회사들이 장래에 시장이나 고객을 분할하는 어떠한 합의도 금지한다는 내용도 함께 들어있다.

미국내 제2위 사업자인 Village Voice Media는 뉴욕, 미네아폴리스, 시애틀, 로스앤젤레스 등지에서 Alternative news weekly 발행사업을 하고 있다. 2002년 10월 2일 현재 이 회사의 Cleveland Free Times는 오하이오주에서 가장 큰 Alternative news weekly 사업자였다.

한편 New Times는 피닉스, 클리브랜드, 샌프란시스코, 휴스턴 등지에서 다양한 Alternative news weekly를 발행하며 1백만이 넘는 발행 부수를 자랑하는 이 분야에서는 선도적인 사업자이다.

터니법(the Tunney Act)에 따라서, 제안된 동의명령은 연방관보에 실



릴 예정이다. 이 동의명령과 이해관계에 있는 자는 60일 이내에 연방법무부 독점금지국 송무3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60일이 지난 후에 법원은 이 동의명령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결을 할 수 있다.

2003. 1. 27. 연방법무부

연방법무부, FCC에 VERIZON사의 장거리 전화서비스 허가 권고

연방법무부는 Verizon사가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이하 FCC)를 상대로 신청한 메릴랜드, 워싱턴 D.C. 및 웨스트 버지니아 지역에서의 장거리 전화서비스의 제공을 허가해 줄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컬럼비아 지역에서의 요금책정 및 위의 지역들에서의 전화번호부 등록 규정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 볼 것도 요청했다.

“전반적으로 볼 때 Verizon사는 메릴랜드, 워싱턴 D.C. 및 웨스트 버지니아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시내전화시장을 개방하여 경쟁을 유지하고 있다”고 R. Hewitt Pate 독점금지국장 권한대행은 언급했다. “특히 이들 지역에서의 비즈니스 시장에 대한 경쟁자들의 진입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Verizon사의 요금책정 및 전화번호부 등록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문제된 전화번호부 등록 이슈는 현행 통신법 Section 271상의

절차와 연관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FCC는 Verizon사가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Section 271에서 정하고 있는 경쟁평가 체크리스트상의 요건을 만족시켰다고 평가했다. Verizon은 메릴랜드, 워싱턴 D.C. 및 웨스트 버지니아 뿐만 아니라, 현재 별도의 검토가 진행중인 버지니아에서도 이에 대한 조치를 강구했다. 그러나 이들 지역에서 경쟁적인 시내전화 사업자들은 Verizon이 전화번호부 등록에 있어서 여전히 차별적 취급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방법무부는 FCC가 Verizon의 신청을 검토하는 동안 이와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아울러 FCC가 Verizon이 전화번호부 등록과 관련한 최근의 변화상황을 감안하여 Section 271상의 의무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다.

또한 연방법무부는 Verizon이 장거리 서비스를 신청할 당시 요금이 비용에 근거하여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 컬럼비아 공공서비스 위원회(the District of Columbia Public Service Commission)의 평가에도 주목했다. 이에 앞서서 연방법무부는 현재의 요금이 비용에 근거해 볼 때 효율적인 것인지 여부에 대한 FCC의 판단을 연기시킨 바 있다.

분할된 AT&T의 일부로서 운영되던 Bell사가 갈라진 이후, 각각 지역별로 독립된 Bell사들(the independent Bell Operating Companies; 이하 BOCs)은 자신의 지역에서 장거리 전

화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통신법상의 규제를 받아오고 있다. 1996년 통신법 Section 271에서는 Verizon사와 같은 BOCs들이 특정한 주들에서 경쟁을 위해 시내통신시장을 개방하고자 마련된 다양한 법적 요건들을 충족시켰다고 FCC가 판단해야만 그 지역내에서 장거리 전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몇몇 주들에서는 BOCs가 장거리 전화서비스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FCC는 반드시 연방법무부의 의견을 들어서 경쟁상황에 대한 평가와 그 BOC에게 장거리 전화서비스의 제공을 허가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무부의 의견에 “실질적인 비중”을 두어야 한다.

Verizon사는 장거리 서비스 허가 신청을 2002년 12월 19일에 FCC에 했다. 통신법에 의하면 FCC는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003. 1. 27. 연방법무부

EU

유럽위원회, 아지노모토 등에 의한 뉴클레오티드 카르텔에 대해 제재금 부과

유럽위원회는 금일 일본의 아지노모토 주식회사와 한국의 Cheil Jedang Corp.(제일제당) 및 Daesang

Corp.(대상)에 대해 동 사업자가 식품의 맛을 높이기 위해 이용되는 물질인 뉴클레오티드(nucleotides)의 가격담합에 참가했다 하여 각각 1,554만 유로, 274만 유로 및 228만 유로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또 하나의 일본기업인 武田약품공업 주식회사는 카르텔에 참가한 것이 인정되었으나 동 사는 유럽위원회에 위법한 협정이 존재한 사실을 밝혔기 때문에 제재금의 전액을 면제받았다.

본 건의 심사는 유럽위원회의 1996년 leniency 방침에 따라 제재금의 면제를 요청, 카르텔 사실을 밝히고, 카르텔 활동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했던 武田약품공업의 대리인이 유럽위원회와 접촉한 1999년에 개시되었다. 그 후 다른 기업도 유럽위원회의 심사에 협력했다.

유럽위원회가 보유한 증거에 의하면 아지노모토, 武田약품공업, Cheil Jedang 및 Daesang은 1998년까지 9년간 카르텔을 행하면서, 그 사이에 「목표」(“target”) 가격 결정에 합의하고 협조적인 가격인상을 실행, 고객을 배분하고 판매수량에 관한 정보를 교환해 왔다.

뉴클레오티드 또는 핵산(nucleic acid)은 포도당(glucose)으로부터 생성되며 식품산업에 있어서 식품에 맛을 더하기 위해 이용된다.

유럽위원회가 발견한 증거는 시장을 부정하게 조작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Daesang이 제출한 합의보고서에는 1995년에 있었던 카르텔 활동에 관해

서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1995년에 있었던 협력이 뉴클레오티드 가격인상의 효과적인 실시를 가져왔으며, 참여했던 모든 회사가 상대방에게 감사했고, 또한 전체가 뉴클레오티드의 그 이상의 가격인상을 위해 1996년에도 협력을 계속할 것이 요구되었다. ... 모든 참가자는 협력의 효과를 그렇게 말함으로써 그들의 협력을 보여주었다.」

본 건 카르텔은 EU경쟁법의 극히 중대한 위반이지만 유럽위원회는 武田약품공업이 제재금액 면제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Daesang, 아지노모토 및 Cheil Jedang도 또한 유럽위원회의 심사에 협력하여 제재금의 감액이 인정되었다. Daesang은 武田약품공업과 같이 유럽위원회에 최초로 신고한 사업자는 아니지만 유럽위원회에서의 정보제공 요구를 받기 전에 자발적으로 신고했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비해 높은 감액율(50%)이 인정되었다.

아지노모토는 뉴클레오티드의 세계 최대의 생산자이고, 또한 1997년 시장점유율은 경쟁사의 거의 2배에 가까워 억지효과를 확보하기 위하여 타사에 비해 높은 제재금이 부과됐다.

제재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것은 위반행위의 실행기간에 있어서 유럽경제지역(EU 15개국 및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및 리히텐슈타인)내의 뉴클리오티드의 연간 매출액이 약800만 유로라는 적은 금액이라는 것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4개사의 판매수량의 합은 거의 전세계의 총판매수량에 해당하

것이다.

2002. 12. 17. 유럽위원회 발표문
 (「월간 공정취인」 2002. 1월호 참조)

유럽위원회, 일본기업 4개사를 포함한 특수탄소 제조업자 7개사에 제재금 부과

유럽위원회는 금일 항공우주산업, electronics 산업 등에서 공업용구 등의 제조에 이용되는 특수탄소(specialty graphite) 시장에 있어서 2건의 가격카르텔에 참가한 7개사에 대해 총 6,060만 유로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본 건의 심사는 유럽위원회가 흑연전극 카르텔 심사를 한 1999년 봄, GraphTech(구 UCAR)가 1996년 leniency 방침에 따라 제재금의 면제를 요청하고 흑연전극시장과 인접한 특수탄소시장에서 반경쟁적 행위를 폭로했기 때문에 개시되었다.

유럽위원회는 이 정보를 기초로 2003년 3월에 새로운 심사를 개시했다. 동 심사는 금일 8개사가 1993년부터 98년까지의 기간에 등방성특수탄소제품의 가격 결정, 민감한 사업정보 교환, 시장의 배분을 행함으로써 세계규모의 카르텔에 참가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종료했다.

본 건 카르텔에 참가한 것은 다음의 8개사이다; SGL Carbon AG(독일), Carbone-Lorraine S.A.(프랑스), Carbon-Lorraine, Ibiden, Tokai, Toyo Tanso 및 Nippon Steel



Chemical, Graph Tech International, Ltd.(미국) 및 Intech EDM B.V.(네덜란드). SGL 및 Graph Tech는 상기 카르텔과 함께 압출성형흑연제품의 가격카르텔에 참가해 왔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특수탄소」는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는 일련의 탄소제품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등방성흑연(isostatic graphite)은 등방성압축에 의해 생산된 방전가공용전극, 연속주조용 다이, 열처리프레스금형 및 반도체용 부품에 이용된다.

위반행위 실행기간중 관련사업자는 상기 2개 제품에 있어서 유럽경제지역의 시장 대부분을 차지해 왔다.

등방성흑연 카르텔은 1993년 7월 23일 일본 衛殿場(동경부근)에서 있었던 「Top level 회담」에 의해 개시된 동 회합에서, 주요 제조업자는 세계시장에서의 기본적인 활동원칙에 대해서 합의한 지역 및 각국의 경영자급의 정기적 multi 회합(항상 일본에서 해왔던)의 개최를 내용으로 하는 감시·집행시스템이 개시되었다. 본 건 카르텔은 1998년까지 4년반에 걸쳐서 작용했다.

1993년 2월 24일 및 25일 파리에서의 회합에서는 UCAR과 SGL과의 사이에 기계가공전의 압출성형특수탄소 시장에서의 가격공모가 개시되었다. 이 카르텔의 기간을 통해 양사는 몇 월 몇 일에 얼마의 가격으로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하는 등 가격에 있어서의 화합을 정기적으로 행하였고, 이는 3년반 이상 계속되었다.

각각의 카르텔에 있어서 각 기업의 행위는 EC조약 제81조에 규정된 경쟁규칙의 매우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다.

각사의 제재금액

- SGL : 2,775만 유로
(등방성흑연 카르텔 1,984만 유로, 압출성형흑연 카르텔 881만 유로)
- Toyo Tanso : 1,079만 유로
- Carbone-Lorraine : 697만 유로
- Ividen : 358만 유로
- Nippon Steel Chemical : 358만 유로
- Intech : 98만 유로

SGL, Tokai 및 Graph Tech 3사는 2001년 흑연전극 카르텔 결정후 위원회에 의해 적발된 두 번째의 위반이었다. 그러나 흑연전극 카르텔과 금번의 위반행위는 같은 시기에 행해진 것이므로 유럽위원회는 누범행위가 아니라는 견해를 갖고, SGL 및 Tokai의 제재금을 증액하지 않았다. Graph Tech는 유럽위원회에 카르텔의 존재를 폭로함으로써 제재금을 전액 면제받았다.

단, SGL에 대해서는 등방성흑연 카르텔의 주모자였으므로 그 제재금액에는 유럽위원회가 산출한 기초액의 50%의 증액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SGL은 또한 이의고지서 발부 전에 유럽위원회에 협력하였기 때문에 그 제재금액에는 35%의 감액이 포함되어 있다.

Carbon-Lorraine, Ividen, Tokai, Toyo Tanso 및 Nippon

Steel Chemical도 이의고지서 발부 전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35%의 감액을 받았다.

Intech는 유럽에서 Ividen의 주요한 판매업자이고, 상당 정도 Ividen의 지시하에 활동했다고 유럽위원회가 인정했기 때문에 40%의 감액이 인정되었다.

각 기업은 3개월 이내에 제재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배경정보

유럽위원회는 카르텔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제재금액을 산정하는데 위반행위의 중대성, 실행기간 및 악화요인 또는 완화요인의 존재를 고려했다. 또한 제재가 균형적이고 충분히 억제하도록 하기 위해 관련시장에서의 기업의 점유율 및 기업의 총체적인 규모에 대해서도 고려했다. 그러므로 1962년 이사회규칙 제1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제재금액은 각 기업의 연간 총 매출액의 10%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되어 있어 제재금액의 산정은 기업의 매출에만 관련된 것은 아니다.

상기의 방법에 의해 결정된 금액은 카르텔 사안의 경우에 제재금 면제 또는 감액에 관한 유럽위원회의 방침(leniency 방침)에 따라 감액된 경우가 있다. 2002년 2월에 새로운 leniency 고시가 채택되지만 본 건에서는 2002년 2월 이전에 협력이 행해졌기 때문에 1996년 고시가 적용된다. 2002년의 신 고시의 상세한 부분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기 바란다.

<http://europa.eu.int/comm/co>

mpetition/antitrust/leniency

2002. 12. 17. 유럽위원회 발표문

(“월간 공정취인, 2002. 1월호 참조)

독일

**연방카르텔청, 레미콘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

연방카르텔청은 빌레펠트, 데트몰트 및 오스나브룩 등에서 활동하는 8개 레미콘 사업자와 개인들에 대해 총 2백 7십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연방카르텔청장은 이 사업자들이 적어도 1990년 1월부터 2001년까지 불법적인 가격담합을 하였고 시장을 분할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그는 사업자들의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는 관행이라며, “경쟁을 제한하여 레미콘 가격은 유효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을 정도의 수준까지 상승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과징금을 부과하는 심결은 확정적으로 이루어졌다. 레미콘 사업자들의 담합에 대해, 연방카르텔청은 지난 2002년 6월에 니더바이에른 지역에서 활동하는 7개 레미콘 사업자에 대하여 반경쟁적인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모두 1백 8십만 유로의 과징금을 확정판결을 내린 적이 있으며, 또한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의 판결도 있다.

2003. 2. 4. 연방카르텔청

**통신·우편규제청, “온라인 선택
요금제에 대한 규제 필요치 않아”**

“현행 온라인 요금제에 대해 규제할 필요가 없다. T-Online을 통한 요금 덤핑이라는 비난은 정당하지 않다”고 통신·우편규제청장인 Matthias Kurth가 말했다. 그는 “이러한 결과는 영국 통신규제당국(Oftel)과의 실제적인 국제적인 요금비교를 통해 내려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통신·우편규제청(Regulierungsbehörde für Telekommunikation und Post)은 그 동안 T-Online International사에서 제공하는 시간제 상품에 대하여 행하던 조사를 종결지었다. 이 규제청은 T-Online의 요금제가 가격덤핑을 통해 경쟁을 제한했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여 왔다. surftime30, surftime60 및 surftime120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 상품들은 소비자가 매달 1회 기본료를 지불하고 각각 30시간, 60시간 및 120시간 동안 도이치텔레콤의 온라인을 사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서, 시간 초과분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요금제도이다.

2003. 2. 5. 통신·우편규제청

일본

**공정위, 입찰참가사업자들의
부당한 거래제한행위에 권고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미자와시(市)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자에 대해 독점금지법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한 결과, 이들 126 참가사업자들이 동 법 제3조(부당한 거래제한의 금지)를 위반하였다고 보고 동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권고조치를 했다.

이와 함께, 이와미자와시의 시장(市長)에 대해서는 입찰담합등관여행위의 배제및방지에관한법률(이하 ‘입찰담합등방지법’)에 의거하여 개선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이와미자와 건설협회(이하 ‘건설협회’)와 이와미자와 관공사업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각각 그 임원들이 독점금지법 위반행위에 관여하고 있었던 점이 인정되는 만큼,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강하게 요구했다.

문제된 입찰에는 일반토목 및 공원 조성 사업자가 46사, 건축공사를 하는 건축업자 42사, 관(管)공사를 영위하는 사업자 17사, 도장공사업자 16사 및 전기공사업자 17사가 관련되어 있었다.

이와미자와시의 건설부, 산업경제부 및 수도부(水道部)에서 이른바 표준형 지명경쟁입찰이라고 칭하는 방법(이하 ‘지명경쟁입찰’)에 의해 일반토목·공



원조성공사, 건축공사, 관공사, 도장공사 및 전기공사로서 발주하는 각 건설공사의 발주업무 담당직원은, 현지기업의 안정적 및 지속적인 수주 확보 등을 목적으로 사업자마다 연간수주 목표액을 설정하여, 이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당 공사에 있어서의 낙찰을 예정하는 이른바 낙찰예정자를 선정해, 낙찰예정자의 명칭 및 설계금액 등을 건설협회의 임원과 협동조합의 상무(이하 '연락책')에게 통보하였고, 연락책은 낙찰예정자에 대해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취지 및 설계금액을 알려주어 왔다.

이번에 문제된 일반토목 및 공원조성 사업자 등 126 사업자들은 지난 1999년 4월 1일부터 수주가격의 하락을 막기 위해, 연락책으로부터 낙찰예정자를 통보 받으면 그 자를 수주예정자로 정했다. 또한 수주금액은 연락책으로부터 통보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수주예정자가 정하기로 한다는 합의하에, 수주예정자가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이들 사업자는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각각의 건설공사에 있어서 일정한 거래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다.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126 사업자들이 이러한 경쟁제한행위를 실시하지 않도록 하는 배제조치를 권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러한 권고에 승복하는 경우 이와 동일한 취지의 심결을 하게 되며, 2월 14일의 기간 내에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심판절차를 개시하게 된다.

또한, 이와미자와사에서 발주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은 현지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주의 확보를 위해 시에서 발주하는 각 공사에 대해 반복적으로 입찰 집행 전에 간부의 승인을 받아 각 사업자별 최근 5년간의 평균 수주금액을 산출하여 이를 기본으로 사업자마다 금년도 연간 수주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액을 대강 달성할 수 있도록 개별 공사마다 낙찰예정자를 선정해 낙찰예정업체의 명칭 및 낙찰예정가를 업계 단체의 임원 등에게 알리고 임원들은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취지 및 공사의 설계금액을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이러한 관행은 전기공사 입찰참가업자로 하여금 독점금지법을 위반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이와미자와사 직원의 행위는 지속적으로 낙찰예정자를 선정하여 이를 업계 단체의 임원들에게 통보한 것으로서 입찰담합등방지법 제2조제4항과 제5항 위반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발주된 건설공사에 대해 입찰담합 관여행위가 배제될 수 있도록 필요한 개선조치를 신속하게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2003. 1. 30.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내각부 소속으로 이전

공정거래위원회를 내각부 소속으로 옮기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를 위해 「내각부(內閣府)의외국(外局)으로 이행시키기위한관계법률의정비에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총무성의 외국에 소속되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내각부의 외국 소속으로 이첩시키기 위하여 관계법률을 정비하고자 이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위에 대해서 「향후의 경제제정운영 및 경제사회의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방침」(2002년 6월 각의 결정)에서 “보다 적절한 체제로 이행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내용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법률안으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국가행정조직법에 근거하던 것에서 내각부설치법에 근거하도록 개정되는 한편, 총무대신의 관할에서 내각총리대신의 관할로 이전된다. 또한 현재 국가행정조직법을 준용하던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국의 설치, 조직 및 소관업무에 관한 내용도 앞으로는 내각부설치법을 준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내각부설치법상 내각부의 임무 및 관장사무에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반면에, 국가행정조직법에서는 관련 조항이 삭제된다.

이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올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03. 1. 30. 공정거래위원회